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1. 11. 30.(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 1. 회부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마포중앙도서관)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00)

### 2. 제안이유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강료 감면기준 일부조정 및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0조의2 신설)
-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수립(별표)
- 마포외국어교육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 삭제(별표)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별표)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1.08.19 ~ '21.09.08(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목적은 마포구립도서관 주최 행사 등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추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 조문 신설과 별표 내용 등을 개정하여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제10조의2에 “독서·문화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주최 행사 및 교육 등 참여자에게 심사·추첨 등의 방법으로 1인당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 조문 제13조 “사용료 등” 별표 개별기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시설사용료의 부과기준”에서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에 따라 세미나실, 다목적강당 등 ‘소금나루도서관 시설사용료’ 추가 신설과 ‘집필실 시설사용료’는 집필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입주작가를 선정 운영하고 입주작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회 4시간 1만원’에서 ‘1개월 15만원’으로 조정하여 마포구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 “시설사용료 부과기준과 감면기준” 중 모호한 문구는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과 ‘청소년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0%’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직접적인 적용사례가 없는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였고
- “수강료 부과기준”에서 외국어프로그램 운영 종료에 따른 수강료 기준 삭제와 감면기준에서 ‘외국어프로그램’ 관련 문구도 삭제하였으며
- “수강료 감면기준”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자 본인 및 가족에게만 주었던 100% 감면 혜택을 교육급여자까지 포함한 모든 수급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변경함

○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은 마포구립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의 신설과 신설 도서관 시설사용료 추가 등 사용료 등과 관련한 개별기준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고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는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됨.

## ※ 참고 자료

### 1) 관련법규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련법규]

### 도서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9. 3. 25.>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 제10조의2(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사·추첨 등의 방법으로 1인당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의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마포중앙도서관 임대민(☎ 3153-5813)